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사회 복지 인력을 증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, 가축전염병 방역 대응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며,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및 공동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으로 관리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 - 1,650명 → 1,663명(+13명)
 - 집행기관 : 1,622명 → 1,635명(+13명)
 - 의회사무기구 : 28명(변동없음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별표 3)
 - 정원 총계 : 1,650명 → 1,663명(+13명)
 - 사회복지 인력 확충 : +11명
 - 가축전염병 대응인력 확충 : +1명
 - 공동주택관리 인력 확충 : +1명

- 일반직 계 : 1,612명 → 1,625명(+13명)
- 6급이하 : +13명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면시행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사회복지인력 증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, 가축 전염병 위기관리 역량 제고와 공동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 인력 확충 등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,650명에서 1,663명으로 13명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 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